

第10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99.4.24 ~ 4.27.)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1999 · 4 · 통권 제64호

I. 개회식	3
II. 제10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5
III. 제10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3
IV. 부 록	
1. 의사일정	19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1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 례안	27
4.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	45
5.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서(안) 설명자료	53
6.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 례안	67

7.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	75
8.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 례안 심사보고서	79
9.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 례안 심사보고서	83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9년 4월 24일 (토요일) 10시 33분

開會式順(第101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신용건)

(10시 33분 개식)

(10시 35분 폐식)

● 의사담당 신용건

지금부터 제10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9년 4월 24일 (토요일) 10시 35분

議事日程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0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안
4.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5.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6.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홍재문)
2. 제10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기수위원 외 2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안
(교육감 제출)
5.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교육감 제출)
7.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10시 35분 개의)

성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의장 조일환

제10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

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홍재문

의사과장 홍재문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9년 4월 16일 집행청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이기수위원님 외 두분의 위원님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동일자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고 제 99-4호로 집회 공고하였으며 '99년 4월 20일 집행청으로부터 추가 의안인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의사일정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제100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바 있는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결안은 '99년 4월 2일자로 집행청으로 이송하였으며 '99년 4월 17일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원

안대로 가결되었고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총액 변동없이 세출예산중 57억 5,72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된 세입·세출 총 7,488억 6,518만 천원으로 수정의결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이기수위원님 외 두분의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집행청에서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 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관련현장을 방문하시거나 또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시어 심의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0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38분)

● 의장 조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미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이었습니다.

일요일이 있고 또 제5호 안건인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이 추가되었습

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의결 그리고 현장 방문에 의사일정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오늘부터 4월 27일까지 하루를 연장해서 4일간으로 하여서 위원발의 교육위원회 회의규칙 개정안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고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을 관련 현장을 방문한 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기에 제10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의사일정 : 별첨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 40분)

●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위원을 대표해서 이기수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기수위원 발언대로 나옴)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위원 선출후 최초의 임시회시 임시로 정하는 의석 순서를 종전까지는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 또는 선출지역 순으로 하여왔으나 '98년 6월 3일 법률 제5546호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교육위원을 선출권역 단위로 선출함에 따라 임시로 정하는 의석 순서도 이에 맞도록 하여 선출지역순을 삭제하고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만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관련 중요 사안들에 대하여 우리 교육위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5분 자유발언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규칙 제2조제3항의 최초 임시회시 임시로 정하는 의석순에 관한 조문중 선출 지역순을 삭제하고 제24조 다음에 제24조2를 신설하여 5분 자유발언제에 대한 신설이유 및 발언방법, 발언신청방법, 발언순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개정안과 관련한 친구조문 대조표와 관계법령 발췌서 등 참고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외 2인 위원이 공동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

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수위원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증개
정규칙안 : 별첨2

(끝에 실음)

● 의장 조일환

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부의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
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 운영에관한조
례안

5.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10시 44분)

●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위원
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1999
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을
동일국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
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눔)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존경하는 조일환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

러분!

21세기를 향한 선진 충북교육으로 도약시
키기 위해 항상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
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
사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충청북도교육
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
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 운영에관한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
무 능률 향상 및 고충 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설
립 • 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
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
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
칙으로 하되 기관장이 5급이하인 기관과 초
• 중 • 고 및 특수학교는 상급기관에 통합설
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법률에서 정한 직장협
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관장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
원은 설립에 관한 안내문을 7일이상 게시하
도록 하였고 협의회의 설립 사실 통보서를
받은 기관장은 7일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토

록 하고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정하도록 하였고 인사 명령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으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일자로 협의회를 탈퇴한 것으로 하였으며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직종별, 직급별,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협의내용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운영은 근무시간외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참 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 : 별첨3

(끝에 실음)

다음은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청주교육청의 잡종재산인 토지 4,465㎡와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폐교 재산인 청원군 강내초등학교저산분교 외 2개교의 토지

2만 6,707㎡, 건물 1,843㎡, 공작물 10종, 임목죽 32본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 변경계획(안) : 별첨4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서(안) 설명자료 : 별첨5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의장 조일환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6.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 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10시 49분)

●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청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교육국장 최성태

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항상 충북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일환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교원 정년단축, 명예퇴직 등으로 상당수의 초등교원이 부족하게 되어 부족 교원의 일부를 충원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5일 실시되는 공립초등학교 기간제 교과 전담교사 선발시험에 합격된 자에 대하여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규칙 교육부령 686호 제8조에 의거 교과전담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수강료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보수교육 대상자의 수강료는 첨부된 표와 같이 인원수에 따라 정하였는 바 우리 교육청은 230명 모집 예정으로 240명 미만인 82만 6천원에 해당될 것입니다.

수강료 납부기간은 당해 개강일 5일 전까지 납부토록 하였으며 과오납 및 개강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 및 교원자

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시 수강료에 관한 교육부 공문 사본, 타시·도의 보수교육과정 이수 대상자의 수강료 징수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 별첨6

(끝에 실음)

(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조일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중 규칙조례안과 조례안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또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은 관련 현장을 방문한 후 모레 있을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7일 있을 제2차 본회의에서.

7.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52분)

● 의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소위원회는 본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섯분 위원님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본인을 제외한 여섯분 위원님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금회의 회의록 서명위원은 김광수, 손만재 두분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회의가 끝나면 바로 조례심사소위원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오전에 역시 소위원회를 한 후 이어서 그 다음날까지 의안관련 현장방문이 있겠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청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조일환, 부의장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12명

교육감 김영세,

교육국장 최성태,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공보감사담당관 김진성,

초등교육과 김천호,

중등교육과장 이주원,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교육정보화과장 윤주택,

총무과장 고일영,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의사일정 : 별첨1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증개정규칙안 : 별첨2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 별첨3
- ▶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 : 별첨4
- ▶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서(안) 설명자료 : 별첨5
- ▶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 별첨6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9년 4월 27일 (화요일) 10시 00분

議事日程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4.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기수위원 외 2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교육감 제출)
3.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교육감 제출)

(10시 00분 개의)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대리 이기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는 의안과 관련하여 매각대상 폐교들을 다녀오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

니다.

따라서 오늘은 동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원안과 수정안을 놓고 심의·의결하겠으며 지난 이틀간 조례심사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신 개정 조례안 2건 그리고 관련 현장을 다녀 오신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변경 계획안 등 모두 4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 01분)

● 의장대리 이기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교육위원을 대표하여 송진하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하위원 발언대로 나눔)

● 송진하 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5분 자유발언제를 신설함으로써 교육관련 중요 사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위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개정규칙안 제24조의2중 제2항에서 5분 자유발언의 발언 내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도 삭제하여 해당 조문을 보다 간결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규칙안 제20조의2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 : 별첨7

(끝에 실음)

(송진하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대리 이기수

송진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을 모았고 그에 따라 수정안을 공동 발의하게 되었

으므로 더이상 질의나 토론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표결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각각 거
수로써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본인을 포함하
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
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
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
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
례안

(10시 06분)

● 의장대리 이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
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
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

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등 2건의 조
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심사소위원회 이충원위원장으로
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
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위원장님께서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발언대로 나
옴)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충원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충원위원입니
다.

우리 소위원회 6인 위원이 충청북도교육
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공립초
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
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위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은 지난 4월 16일과 20일 교육
감님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4월 24일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
부됨에 따라 같은 날부터 회의를 갖고 두번
에 걸쳐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
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
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 주요내용은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가입대상 공무원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률로 정한 사항이라 불가피하다는 데에 심사위원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은 대체적으로 상위직 공직자도 가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도 첨부해 드립니다.

집행청에 당부드리는 말씀은 향후 직장협의회 의견수렴이 활성화 되어 업무나 근무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등 직장협의회 발전적 정착에도 힘써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하신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 참 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8

(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심사보고 주요 내용만을 간단히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립초등학교 교과 전담교사 시험에 선발된 자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실업자 교육 및 공무원·교원들의 연수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전담교사의 자격취득에 따른 수강료를 직접 본인들에게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개인 자격취득에 따른 제반 경비의 수이자 부담원칙에 입각해서 본 조례안이 작성되었다는데 심사위원의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는 향후 선발된 교과전담교사 중 수강료와 관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

짧은 기간임에도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에 인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들도 본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위원을 대표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

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9

(끝에 실음)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자리로 돌아
감)

● 의장대리 이기수

이충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
괄 질의후 일괄 답변의 형식으로 하고 보충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하겠
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집행청 관계관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2호 안건인 충청북도교육
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
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
으십니까?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
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제3호 안건인 충청북도공립초등학
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
수강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
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
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
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4.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
계획안

(10시 15분)

● 의장대리 이기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공
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
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거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101회-본회의 제2차)

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그리고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등 제 4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

또한 의안과 관련하여 매각대상 폐교 외 네곳의 현장을 다녀오시느라 동료 위원님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위원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청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0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폐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조일환, 부의장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0 출석공무원 : 12명

교육감 김영세, 교육국장 최성태,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공보감사담당관 김진성, 초등교육과 김천호,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총무과장 고일영,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춘우,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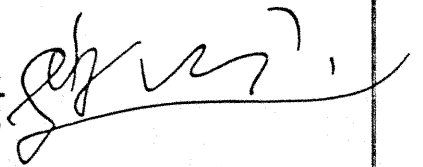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 : 별첨7
- ▶ 충청북도교육감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8
- ▶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9

제10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1999. 5.

의 장

조 일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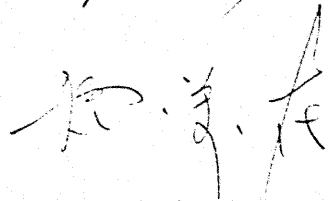
위 원

김 광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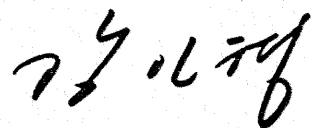
위 원

손 만 재



의사국장

강 인 형



(별첨 1)

議 事 日 程

第10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1999. 4. 24. ~ 4. 27. (4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99. 4. 24. (토) 10:00 10:30	<input type="checkbox"/> 교육위원 협의회 : 교육위원실. <input type="checkbox"/> 개회식 [제1차 본회의 개의] 1. 제10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기 : 1999. 4. 24. ~ 4. 26. (3일간)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제안설명)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4.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제안설명) 5.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 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제안설명) 6.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제1차 본회의 산회]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4. 26. (월) 10:00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및 의안관련 현장방문	※ 4. 25. (일요일) 본회의 휴회
4. 27. (화) 10:00	[제2차 본회의 개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4.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 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제2차 본회의 산회] ※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 101 - 1 호
의 결 연 월 일	1999. 4. 14. (제 101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발 의 자	이 기 수 교육위원 외 2인
발의년월일	1999 . 4 . 16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101- 1호
----------	----------

발의년월일 : 1999. 4. 16.

발 의 자 : 이기수 교육위원 외 2인

1.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5546호; 1998.6.3.)으로 교육위원을 선출 권역을 단위로 선출함에 따라 최초의 임시회시 임시로 정하는 의석순서를 이와 맞도록 하고, 교육관련 중요사안들에 대하여 교육위원이 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5분 자유발언」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최초의 임시회시 임시로 정하는 의석순서를 가나다순 또는 선출지역순에서, 선출지역순을 삭제하여 가나다순만으로 변경(안 제2조)
- 나. 본회의시 교육위원이 안건과 청원·기타 중요관심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 제도를 신설함(안 제24조의2)

3. 제안근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안 제2조

4. 규 칙 안 : 덧붙임

5.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나.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또는 선출지역순”을 삭제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5분 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위원에게 안전과 청원·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

③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본회의개회의일 전일까지 발언요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5분 자유발언의 발언순서는 신청접수순서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사 항

□ 신·구조문대비표 : 뒷면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조 (교육위원의 선출) ①교육위원은 선출권역을 단위로 선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등록 등) ③위원의 의석은 의장이 정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최초의 임시회의 경우에는 의사국장이 위원성명의 가나다순 또는 선출지역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2조 (등록 등) ③ (삭제)</p> <p>제24조의2 (5분 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위원에게 안전과 청원·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p> <p>③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본회의 개의의일 전일까지 발언요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5분 자유발언의 발언순서는 신청접수순서에 의한다.</p>

(별첨 3)

의안번호	제 101 회
의 결 년 월 일	1999. 4. 27. (제 101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9. 4. 16.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01-2

제출년월일 : 1999. 4. 16.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련부서 : 충 무 과

제안이유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관한법률(1998. 2. 24. 법률 제551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직장협의회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장이 5급 이하인 기관과, 초·중·고·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통합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함. (안 제2조)
- 나. 법률에서 정한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관장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함. (안 제3조)
- 다.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안내문을 7일 이상 게시토록 하고, 설립 사실 통보서를 받은 기관장은 7일 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교부 받은 날에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것으로 봄. (안 제4조)

라. 협의회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정하도록 함.
(안 제5조)

마. 협의회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사명령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으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일자로 협의회를 탈퇴한 것으로 봄. (안 제6조)

바.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도록 함. (안 제8조)

사.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아. 협의회의 운영은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도록 함. (안 제13조 내지 제15조)

제정조례안 : 붙임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기관장이 5급 이하인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과 초·중·고·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는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③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단위를 말하며, 국·과 및 담당관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협의회의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

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③ 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실·국·과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④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제2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⑥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임기·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제6조(협회의 가입 및 탈퇴) ①협회의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협회에 가입하거나 협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회 가입원서를 협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협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협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순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②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회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협회는 협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협회 가입공무원의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한다.

2.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⑤협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 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협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협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회에 시정·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협의회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⑤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11조(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 의무)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 업무에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세부사항 위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명	칭	
대 표 자	근무부서	
	직 급	
	성 명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 보완요구서

명	칭	
대 표 자	근무부서	
	직 급	
	성 명	
보완을 요하는 사항		
보완 이유		
보완 기 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통보사항에 대하여 위와같이 보완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탈퇴)원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p>위 본인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가입(탈퇴) 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 ○ (서명 또는 날인)</p> <p>○○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 귀하</p>			

관계 법령 발췌서

□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998.2.24. 법률 제5516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기관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③ 협의회를 설립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설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가입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중 6급이하의 외무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5.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과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 또는 자동차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제4조(가입 및 탈퇴의 자유) 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기관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당해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협의회 구성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기관장의 의무) ①기관장은 협의회가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한 경우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관장은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은 협의회외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협의회외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회외의 설립단위·가입범위 기타 협의회외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외의 협의절차·시기·방법 기타 협의회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사국의 설치 등) ①교육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사국을 두고, 의사국에는 의사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국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④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임명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별첨4)

의안번호	제 101-3 호
의 결	1999. 4. 27.
년 월 일	(제 101 회)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9. 4. 16.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101-3
----------	-------

제출년월일 : 1999. 4. 16.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처분 사유가 추가발생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고 자 함

2. 주요골자

□ 공유재산의 처분

0 충청북도청주교육청 잡종재산 매각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57-2번지의외 4필지 4,465㎡

0 폐교재산 매각 3교

· 청원 (구), 강내초등학교 저산분교

- 청원군 강내면 저산리 200-3번지의외 3필지 13,443㎡

- 위 지상 건물 6동 768.75㎡

- 위 지상 공작물 5종

· 청원 (구), 수성초등학교 입동분교

- 청원군 북일면 입상리 425-1번지의외 9필지 5,964㎡

- 위 지상 건물 1동 687.60㎡

- 위 지상 공작물 2종

- 단양 (구), 단천초등학교 방곡분교
-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 156번지외 2필지 7,300㎡
- 위 지상 건물 5동 386.97㎡
- 위 지상 공작물 3종
- 위 지상 입목죽 32본

3. 제안근거

- 0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 0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4.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서 : 덧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6. 설명자료 : 별책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7-1)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4	31,172	486,166	4	31,172	486,166
		건물			3	1,843.32	170,033	3	1,843.32	170,033
		기타			3		3,877	3		3,877
	4. 매 각	토지			4	31,172	486,166	4	31,172	486,166
		건물			3	1,843.32	170,033	3	1,843.32	170,033
		기타			3		3,877	3		3,877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매각대상 재산목록 (7-4)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금 액	매 각 시 기	매 각 사유	매수희망자 주소, 성명	비고
	기관명	구 분	소 재 지	수 량					
1	청주교육청	토 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157-2외4	4,465	280,259	하반기	교육환경개선재원 확보	.	1 쪽
2	구.강내초등 학교저산분교	토 지	청원군 강내면 저산리200-3외3	13,443	163,885	하반기	폐교재산매각	.	2-5 쪽
		건 물	·	768.75	46,091			.	
		공작물	·	5종	2,560			.	
3	구.수상초등 학교입동분교	토 지	청원군 북일면 입상리425-1외9	5,964	25,720	하반기	폐교재산매각	.	6 -9 쪽
		건 물	·	687.6	76,568			.	
		공작물	·	2종	672			.	
4	구.단천초등 학교방곡분교	토 지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156외2	7,300	16,302	하반기	폐교재산매각	.	10 -13 쪽
		건 물	·	386.97	47,374			.	
		공작물	·	3종	376			.	
		입목죽	·	32본	269			.	
계		토 지	4 교	31,172	486,166				
		건 물	3 교	1,843.32	170,033				
		공작물	3 교	10종	3,608				
		입목죽	1 교	32본	269				
		계	교			660,076			

관 계 법 령 발 첩 서

□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第77條 (公有財産의 管理計劃)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을 編成하기 전에 매년 公有財産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計劃(이하 '管理計劃'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제 1 항의 管理計劃에 포함하여야 할 公有財産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 제10조 (公示地價의 適用)

제10조 (公示地價의 適用) ①國家.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團體가 다음 各號의 目的을 위하여 土地의 價格을 算定하는 경우에는 당해 土地와 유사한 利用價値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標準地의 公示地價를 基準으로 하여 당해 土地의 價格과 標準地의 公示地價가 均衡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算定된 地價를 다음 各號의 目的에 따라 加減調整하여 適用할 수 있다.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2.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3. 삭제
4.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희지의 매수 또는 등법
제21조의1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5. 징발법에 의한 토지의 징발에 대한 보상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별첨 5)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서(안)

설 명 자 료

구,강내초저산분교 재산처분계획

1. 학교 연혁

- 개교 년월일 : 1963. 7. 24.
- 폐교 년월일 : 1995. 3. 1.

2. 처분재산내역 : 총 212,536천원

○ 토 지

(단위: m²,천원)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금 액
청원군 강내면 저산리	200-3	학교용지 대 도 로	12,548	152,709
	201-3		23	377
	200-5		859	10,678
	200-10		13	121
계	4 필지		13,443	163,885

○ 건 물

(단위: m²,천원)

소 재 지	용 도	구 조	건축년도	면 적	금 액
청원군 강내면 저산리200-3	교 실	시.벽.스	1966	578.51	18,372
		철.콘.슬	1988	72.0	15,400
	숙 직 실 창 고 급 식 실 화 장 실	시.벽.슬	1972	28.09	1,254
		연.벽.슬	1988	49.50	10,390
		시.벽.스	1976	21.48	442
		시.벽.스	1968	19.17	233
계	6동			768.75	46,091

○ 공 작 물

(금액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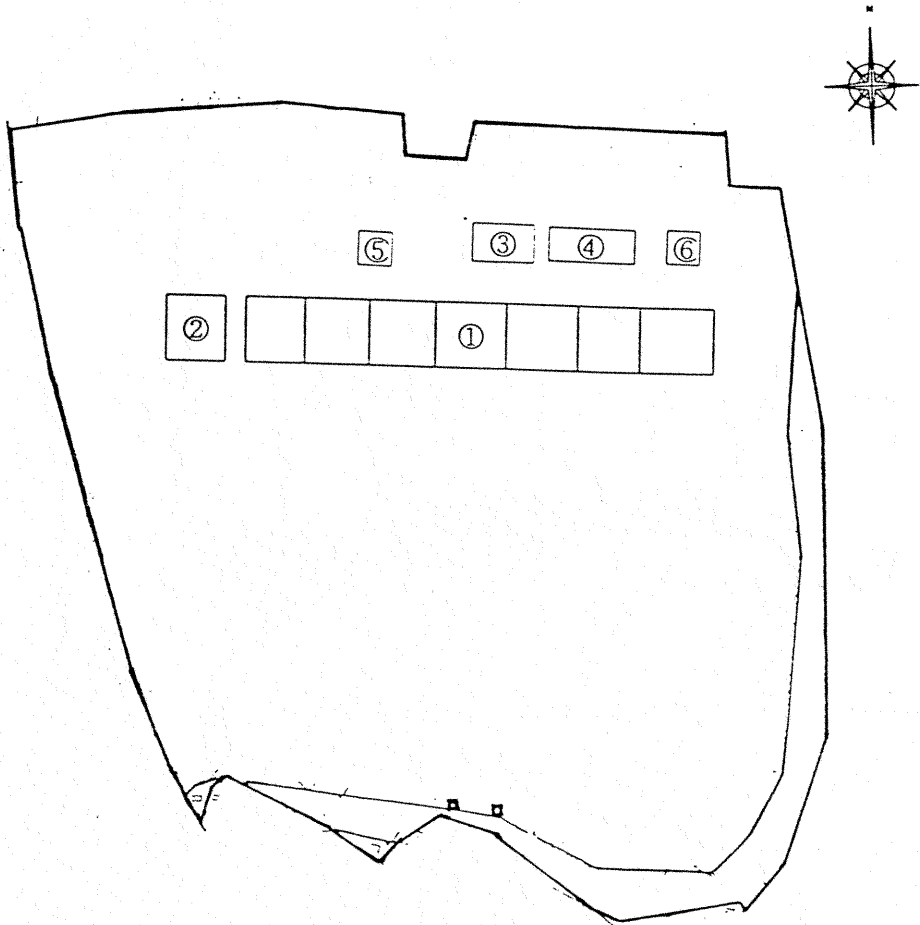
소 재 지	용 도	수 량	금 액	
충북 청원군 강내면 저산리 200-3	교 급 하 휴 조	문 대 구 대 대	2식	318
			2식	1,818
			1식	387
			1식	24
			1식	13
계	5종		2,560	

3. 처분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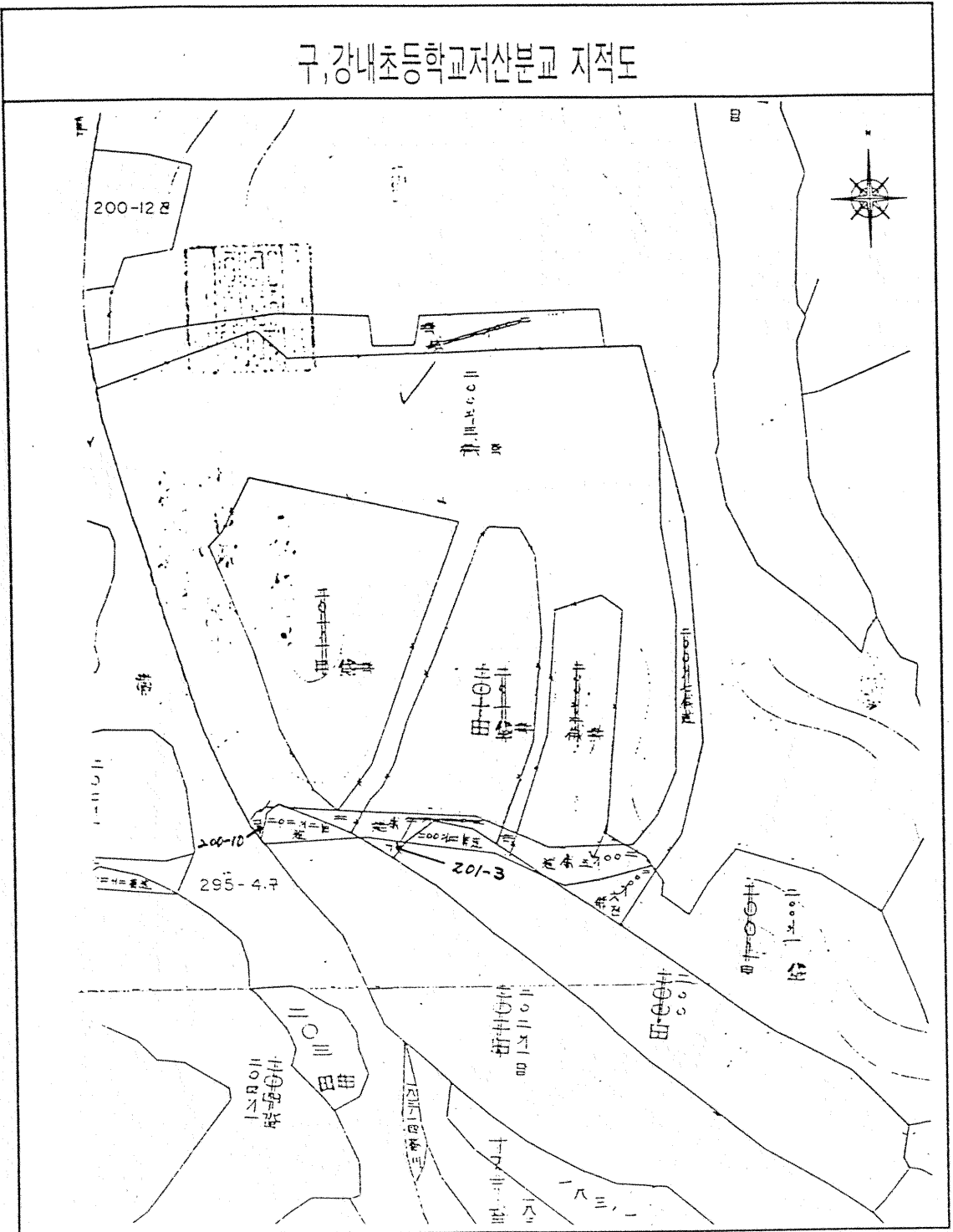
이 학교는 1963. 7.24. 자 개교하여 1995. 3. 1. 자 문달은 학교로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므로 매각하여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함.

구, 강내초등학교저산분교 건물 처분 배치도

건물번호	용도	구조	건축년도	면적(㎡)	금액(천원)	비고
①	교실	시.벽.스	1966	578.51	18,372	0보존불필요교 0매각대금은교 육환경개선사 업에 재투자
②	숙직실	철.벽.스	1988	72	15,400	
③	창고	시.벽.스	1972	28.09	1,254	
④	급식실	시.벽.스	1988	49.5	10,390	
⑤	화장실	시.벽.스	1976	21.48	442	
⑥	화장실	시.벽.스	1968	19.17	233	
계	6동			768.75	46,091	



구, 강내초등학교저산분교 지적도



구,수성초입등분교 재산처분계획

1. 학교 연혁

- 개교 년월일 : 1965. 9. 1.
- 폐교 년월일 : 1996. 3. 1.

2. 처분재산내역 : 총102,960 천원

○ 토 지

(단위: m²,천원)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금 액	
청원군 북일면 입상리	425-1	학교용지 · · · · · · · · ·	3,967	17,110	
	427-1		833	3,593	
	423-3		444	1,914	
	421-2		29	125	
	436-2		· · · · · · · · ·	386	1,664
	426-2			165	711
	426-4		63	272	
	427-11		50	215	
	427-7		17	73	
	427-6		10	43	
계	10 필지		5,964	25,720	

※국유지 426-3번지의외 5필지 2,011m²는 총괄청(청원군)에 인계예정
444-3번지 구거 235m²는 관할청(건설부)에 인계예정

○ 건 물

(단위: m²,천원)

소 재 지	용 도	구 조	건축년도	면 적	금 액
청원군 북일면 입상리 425-1	교 실	철·콘·슬	1980	687.6	76,568

○ 공 작 물

(금액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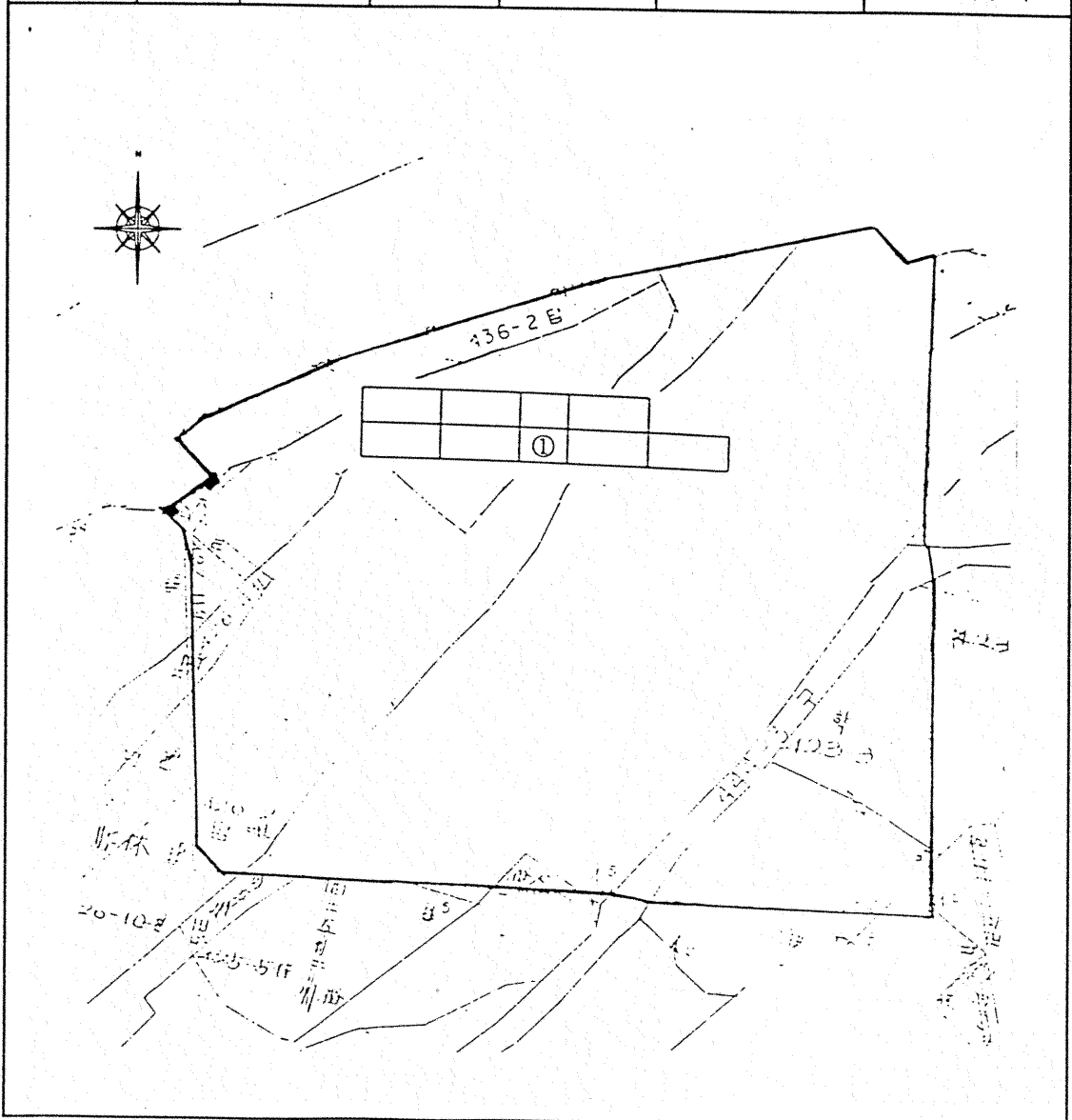
소 재 지	용 도	수 량	금 액
충북 청원군 북일면 입상리 425-1	교 조 회 문 대	1식 1식	388 284
계	2종		672

3. 처분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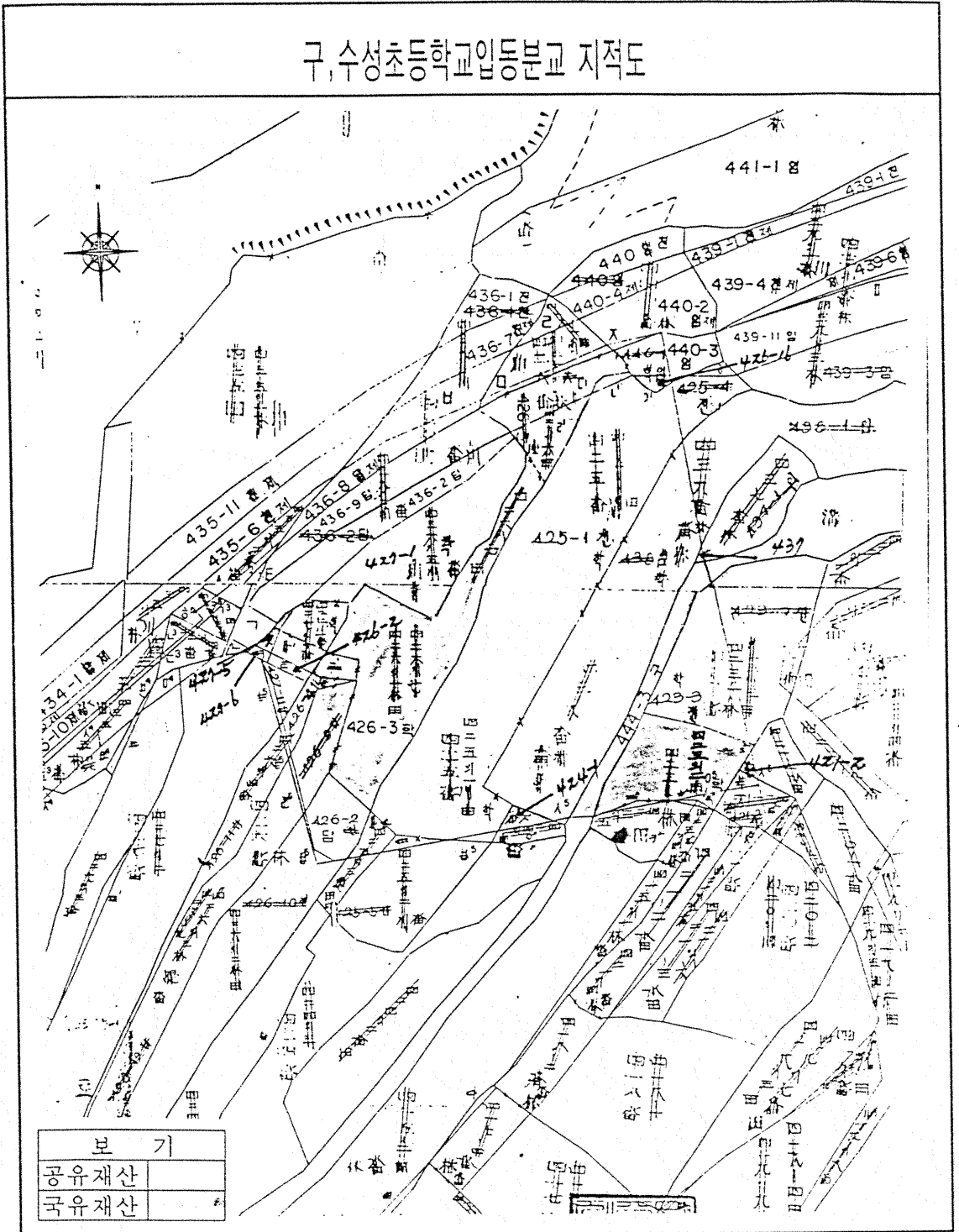
이 학교는 1965. 9. 1. 자 개교되어 1996. 3. 1. 자 문달은 학교로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므로 매각하여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함.

구,수성초등학교입동분교 건물 처분 배치도

건물번호	용도	구조	건축년도	면적(m ²)	금액(천원)	비고
①	교실	철.콘.슬	1980	687.60	76,568	0 보존불필요 0 매각대금은 교 육환경개선사 업에 재투자



구,수성초등학교입등분교 지적도



보기	
	공유재산
	국유재산

구, 단천초등학교방곡분교 재산처분계획

1. 학교 연혁

○ 개교 년월일 : 1944. 4. 30.

○ 폐교 년월일 : 1991. 3. 1.

2. 처분재산내역 : 총 64,321 천원

○ 토 지

(단위: m², 천원)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금 액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	156	학교용지	7,089	15,780
	355-1		130	276
	354-1	임 야	81	246
계	3 필지		7,300	16,302

※국유지 396-1번지 250m²는 총괄청(단양군)에 인계예정

○ 건 물

(단위: m², 천원)

소 재 지	용 도	구 조	건축년도	면 적	금 액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 156	교 실 사 택	시.벽.슬	1971	260.1	29,984
		"	1972	39.66	1,399
	화장실	"	1986	61.62	12,885
		"	1968	19.83	833
		"	1986	5.76	2,273
계	5동			386.97	47,374

○ 공 작 물

(금액단위 : 천원)

소 재 지	용 도	수 량	금 액
충북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 156	수 조 회 대	1식	296
	국 기 게 양 대	1식	56
		1식	24
계	3종		376

○ 입 목 족

(금액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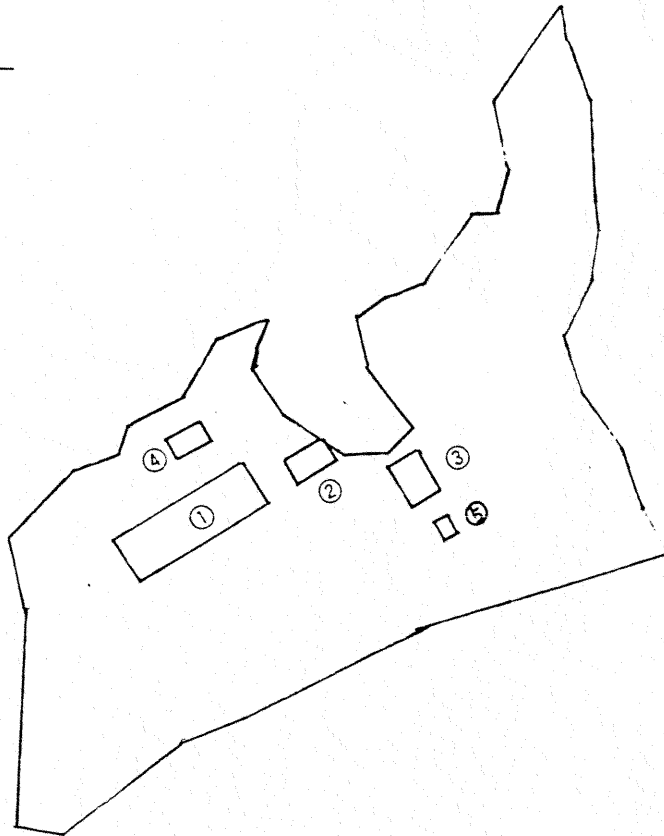
소 재 지	수 종	수 량	금 액
충북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 156	향 나 무	8본	128
	은행 나 무	2본	10
	버드 나 무	7본	95
	잣 나 무	15본	36
계		32본	269

3. 처분사유

이 학교는 1944. 4.30. 자 설립되어 1991. 3. 1. 자 폐교된 학교로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므로 매각하여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함.

구, 단천초방곡분교 건물 처분 배치도

건물번호	용도	구조	건축년도	면적(m ²)	금액(천원)	비고
①	교실	시.벽.슬	1971	260.1	29,984	0보존불필요 0매각대금은교 육환경개선사 업에 재투자
②	사택	"	1972	39.66	1,399	
③	"	"	1986	61.62	12,885	
④	화장실	"	1968	19.83	833	
⑤	"	"	1986	5.76	2,273	
계	5동			386.97	47,374	



(별첨 6)

의안번호	제 101-4호
의결 년 월 일	1999. 4. 27. (제 101 회)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9. 4. 20 .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의안
번호

101-4

제출년월일 : 1999. 4. 20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련 부서 : 교원지원과

제정사유

-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제8조에 의거 ‘99 공립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시험에 선발된 자의 교과전담 교사의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를 정하고자함.

주요골자

- 보수교육대상자 수강료(안 제2조)
「80명미만 1,071,000원, 120명미만 954,000원, 160명미만 887,000원, 200명미만 854,000원, 240명미만 826,000원, 280명미만 811,000원, 320명미만 796,000원, 320명이상 787,000원」
- 수강료는 당해 개강일 5일전까지 납부(안 제3조)
- 과오납 및 개강하기전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료 미반환(안 제4조 제1호 및 제2호))
- 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 한 때에는 수강허가 취소(안 제5조)

제정근거

-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제8조제1항

조례안 : 덧붙임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시 수강료에 관한 사항 교육부 교양 81820-356('99.3.20)공문 사본 : 덧붙임
- 타시·도 보수교육시 수강료 징수 현황 : 덧붙임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하 “보수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강료) 보수교육과정 이수 대상자의 수강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징수시기 및 방법) 수강료는 당해 개강일 5일전까지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입한다

제4조(수강료의 미반환) 이미 납입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한다.

1. 과오납금의 경우
2. 개강하기전 부득이 한 사유로 보수 교육을 받지 못 하게 된 경우

제5조(징수방법)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소정 기일내에 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 할 때에는 수강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의 수강료

교육과정	교육시간	대상인원	수강료	비고
초등학교교과 전담교사과정	336시간	80명 미만	1,071,000원	
		120명 미만	954,000원	
		160명 미만	887,000원	
		200명 미만	854,000원	
		240명 미만	826,000원	
		280명 미만	811,000원	
		320명 미만	796,000원	
		320명 이상	787,000원	

관계법령 발췌서

-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교육부령 제686호 1996. 8. 30)

제8조(수강료)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는 교육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대상자) 교육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별표1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교 육 부

우 110-760 / 서울시 중트구 세종로 77 / 전화 (02) 720-3440~2 / 전송(02) 737-6424
교원양성연수과장 김 철 / 교육행정사무원 박성민 담당자 이호기

문서번호 교양 81820-356

시행일자 1999.03.20 (1년)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선 결	교육감	지 시		
접	일자	1999. 03. 20	결 재	부교육감
	시간	13 : 25		교육국장
수	번호	2495	공 발	교원차량과장
처 리 과				학사담당
담 당 자				

제목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브수교육시 수강료에 관한 사항

1.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브수교육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브수 교육 대상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초등교사신규임용공통관리위원회에서 산출한 표준 연수경비 자료를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니 금번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브수교육시 납부하는 수강료를 조례로 정함에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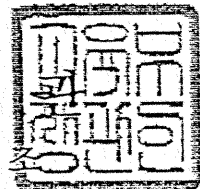
<대상인원별 1인당 연수경비>

교육과정	대상인원	연수경비(1인당)	비고
초등학교교사과정	80명까지	1,071,200원	336시간 교육
	120명까지	954,400원	
	160명까지	887,700원	
	200명까지	854,300원	
	240명까지	826,600원	
	280명까지	811,400원	
	320명까지	795,000원	
	320명초과	787,600원	

첨부 : 연수경비 산출자료(대상인원별) 1부. 끝.

교 육 부 장

전결 교원정책심의관 김 광



수신처 다01-18

타시·도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의 수강료 징수 현황

(단위 : 천원)

시도별	80명 미만	120명 미만	160명 미만	200명 미만	240명 미만	280명 미만	320명 미만	320명 이상	공채 인원	비고
서울	1,071	954	887	854	826	811	796	787	900명	교육부 기준
부산	1,071	954	887	854	826	811	796	787	185명	교육부 기준
대구	1,071	954	887	854	826	811	796	787	80명	교육부 기준
인천	1,071	954	887	854	826	811	796	787	200명	교육부 기준
광주			미		실		시			
대전	1,071	954	887	854	826	811	796	787	200명	교육부 기준
울산			미		실		시			
경기	1,071	954	887	854	826	811	796	787	450명	교육부 기준
강원	1,071	954	887	854	826	811	796	787	230명	교육부 기준
충남			미		실		시			
전북			미				경		300명	
전남	1,071	954	887	854	826	811	796	787	350명	교육부 기준
경북	1,071	954	887	854	826	811	796	787	120명	교육부 기준
경남			미		실		시			
제주			미		실		시			

(별첨 7)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

발의년월일 : 1999. 4. 26.

발 의 자 : 송진하 교육위원 외 6인

1. 수정이유

「5분 자유발언」 제도를 신설하여 교육관련 중요사안들에 대하여 교육위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근본취지를 살리고 조문의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제한하는 부분과 답변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24조의2 중 제2항을 삭제함

나.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함

3. 수정안 : 덧붙임

4. 참고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 덧붙임

충청북도교육위원회규칙 제 호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증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증개정규칙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4조의2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24조의2 (5분 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위원에게 안전과 청원·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p> <p>③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요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5분 자유발언의 발언순서는 신청접수순서에 의한다.</p>	<p>제24조의2 (5분 자유발언) ①</p> <p>.....</p> <p>.....</p> <p>.....</p> <p>.....</p> <p>② (삭 제)</p> <p>②</p> <p>.....</p> <p>.....</p> <p>③</p> <p>.....</p>

(별첨 8)

(제101회 임시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4. 26

충청북도교육위원회조례심사소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4월 16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1999년 4월 24일
- 다. 상정일자 : 1998년 4월 24일(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4월 24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4월 26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가. 제안이유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1998. 2. 24. 법률 제551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직장협의회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장이 5급 이하인 기관과, 초·중·고·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통합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함. (안 제2조)
- 법률에서 정한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관장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함. (안 제3조)
-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안내문을 7일 이상 게시토록 하고, 설립 사실 통보서를 받은 기관장은 7일 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교부 받은 날에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것으로 봄. (안 제4조)

-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정하도록 함.
(안 제5조)
- 협의회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사명령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으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일자로 협의회를 탈퇴한 것으로 봄. (안 제6조)
-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도록 함. (안 제8조)
-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 협의회는 운영은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도록 함. (안 제13조 내지 제15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제정조례안은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가입대상 공무원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법률로 정한 사항이라 불가피하다는데에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공무원직장협의회 의견수렴이 활성화되고 실질적으로 업무나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등 직장협의회가 발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첨 9)

(제101회 임시회)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4. 26

충청북도교육위원회조례심사소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4월 20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1999년 4월 24일

다. 상정일자 : 1998년 4월 24일(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4월 24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4월 26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교육국장 최성태)

가. 제안이유

○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제8조에 의거 '99 공립 초등학교 교과 전담교사 시험에 선발된 자의 교과전담 교사의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를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보수교육대상자 수강료 (안 제2조)

「80명미만 1,071,000원, 120명미만 954,000원, 160명미만 887,000원,
200명미만 854,000원, 240명미만 826,000원, 280명미만 811,000원,
320명미만 796,000원, 320명이상 787,000원」

○ 수강료는 당해 개강일 5일전까지 납부 (안 제3조)

○ 과오납 및 개강하기전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료 미반환 (안 제4조 제1호 및 제2호)

○ 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 한 때에는 수강허가 취소 (안 제5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제정조례안은 공립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시험에 선발된 자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실업자교육 및 공무원(교원) 교육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전담교사의 자격취득에 따른 수강료를 본인들에게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자격취득에 따른 제반 경비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작성되었다는데 심사위원의 의견을 모았으며,

향후 본 조례 시행시 선발된 교과전담교사 중 수강료와 관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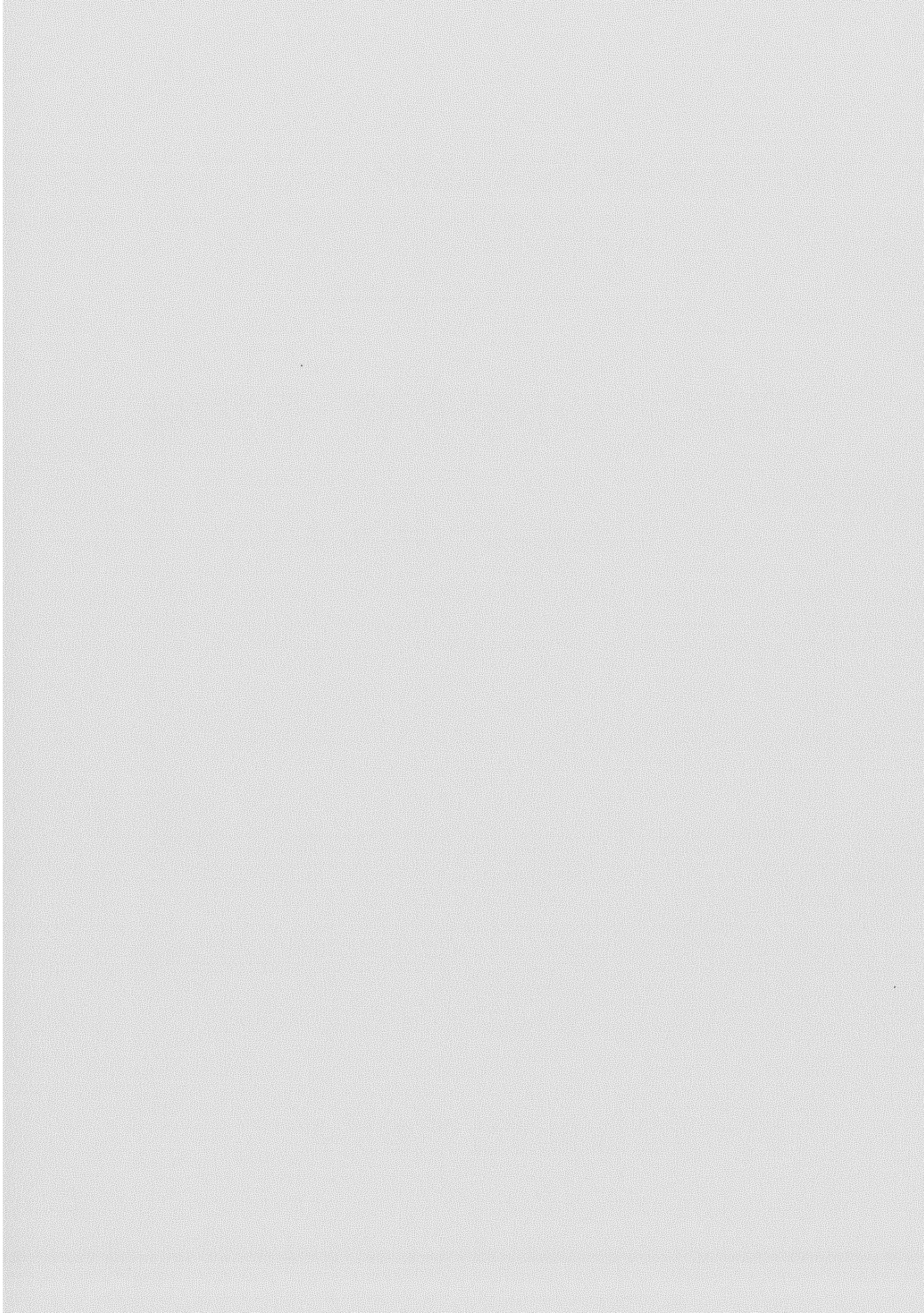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第10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99.4.24 ~ 4.26.)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10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3
II. 제10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23
III. 부 록	
1. 의사일정(안)	29
2.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조례 제정내용	31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안)	43
4.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안)	47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9년 4월 24일 (토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101회 임시회 제1차 조례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5.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5.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11시 00분 개회)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1. 위원장선출의건

(11시 01분)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바로 이어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분 추천하겠습니다. 우리 이충원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이충원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원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교대)

● 위원장 이충원

앉으신 좌석에서 그냥 하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오늘 보니까 회기마다 앉았다 그냥 일어나시고 위원장 한번 못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스럽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출의건

(11시 03분)

● 위원장 이충원

그러면 회의규칙에 의해서 간사선출을 하는 순서가 되겠는데, 간사선출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정식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선출방법은 방금전에 제가 추천되어서 당선된 그 방법이 어떠신가요?

● 이기수 위원

그 방법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이상일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충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일위원님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참으시죠?

(모든 위원 “좋습니다” 함)

제가 인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사님도 인사를 하세요.

● 간사 이상일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04분)

● 위원장 이충원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어떠세요. 편의상 위원장인 본인이 제안하도록 하는데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과 26일로 하고 2건의 제정조례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26일로 하여 2건의 제정조례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 06분)

● 위원장 이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는 본회의에서 다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보충설명할 것이 있으면 하시죠.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일영

총무과장 고일영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주요내용을 발췌해서 한부씩 드렸는데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원안은 주요내용에 약간의 살을 붙여서 만들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로 이 주요내용만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참 조 :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조례 제정 내용 (별첨2)

(끝에 실음)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고, 답변은 또 하시고, 질의하고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위원님 부터인가요?

● 이기수 위원

네.

● 위원장 이충원

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만재 위원

교육위원 손만재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에 가입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데 이를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의 수와 전체 지방공무원 대비 백분율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또 두번째 말씀은 협의회에 가입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할 수는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협의회에 가입금지되는 공무원 숫자를 뺀 나머지 지방공무원이 직장협의회 구성원이 된다고하면 이들의 의사가 지방공무원 전체의 의사로 간주될 수가 있는지 여부, 이것이 의문이 되어서 질의 말씀을 드립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고일영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입비율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능직·일반직 합쳐서 72.6%가 가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입금지 대상을 축소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말씀하신 지방공무원 전체의사로 간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재정을 하고자 하는 직장협의회조례는 직장단위로 설립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주시교육청 내에 있는 직장협의회는 청주시교육장하고만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협의회를 가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합쳐서 연합협의회 그런 단체를 만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원군에서 그런 의견이 또는 협의회가 제시되었다고 하면 청원군의 의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손만재 위원

그러면 이 본청에는 1개 단위로 조직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고일영

네, 본청은 합니다.

● 손만재 위원

그러면 본청에 우리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 전체 숫자와 가입할 수 있는 인원, 이것은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총무과장 고일영

본청은 가입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원이 147명인데 118명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손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그 다음 송진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진하 위원

교육위원 송진하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조에 보면 협의회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총무과장 고일영

결국 협의회가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근무환경개선이라든지, 업무능률향상이라든지, 복무관련보충사항 처리에 관한 이런 협의사항 이런 것들을 보충처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리고 노동조합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 총무과장 고일영

노동조합은 단체 행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에 의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불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에 의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직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에는 없습니다.

● 송진하 위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으니까 협의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고일영

그렇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렇다면 사업이라는 것이 노동조합과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지요.

● 총무과장 고일영

지금 특별한 사업을 한다기 보다는 직장 협의회를 하기 위한 제반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한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충원

다음 이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조에 협의회규정이 있는데 거기 명칭 목적 및 사업 이렇게 여러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이 규정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고일영

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초창기이고,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예측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 이기수 위원

아직 그런건 안되어 있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놓고, 세부시행규칙은 별도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 총무과장 고일영

규칙은 저희가 제정을 하고, 또 이 직장 협의회 내부적으로 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은 직장협의회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직장협의회에서

● 총무과장 고일영

예.

● 이기수 위원

그리고 이 조례는 테두리만 정해놓고서 나머지는

그런데 협의내용을 될 협의해야 된단든지 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고일영

내용이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지정이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고일영

예, 이게 소속 직장의 근무환경개선에 해당되는 사항, 그리고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사항, 그리고 보충관련사항 이렇게 세가지로 아주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도 그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 총무과장 고일영

분명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조례에 안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안넣으셨다는 얘기지요?

● 총무과장 고일영

네.

● 이기수 위원

임기같은 것이라든지 규칙에 다시 재정해야 되지 않나요, 협의위원에 대한 임기요?

● 총무과장 고일영

그것도 여기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위원은 2년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게하고

● 이기수 위원

여기 8조에 있군요.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그 다음에 이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상일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면 초·중·고 특수학교는 설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거기에 기관장은 교장으로 안보고 행정실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고일영

이것은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기관에 통합해서 설립·운영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이상일

그런데 그 법 취지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을 교장으로 본다면은 4급이상일 거란 말이에요, 소속장을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는 그 대상 인원이 두명, 세명, 인원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 간사 이상일

기능직이 아무리 많아도 가입을 못하는 사람은 빼고 그러니까.....

● 총무과장 고일영

4명정도 됩니다.

● 간사 이상일

많이 안되니까 그러는 모양이구만요.

● 총무과장 고일영

불과 몇 명 안됩니다.

● 간사 이상일

나는 왜 이것을 해석을 잘 못했느냐 하면은 초·중·고등학교의 장을 교장으로 봤을 때 장학관이기 때문에 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거기도 구성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봐서 거기 장을 행정실장으로 보느냐.....

아니죠?

● 총무과장 고일영

아닙니다.

● 간사 이상일

그러면 인원이 성립될 인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고일영

예. 그렇습니다.

● 간사 이상일

그 다음에 궁금해서, 회비는 없게 돼 있죠, 회비같은 것을 걷는다든지?

● 총무과장 고일영

이것을 협의회 규정으로 이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마다, 그러니까 기관이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회에서 별도의 또 뭐 정하라마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간사 이상일

그 다음에 지금 구성될 수 있는 것이 교육청 본청하고 직속기관,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지역교육청, 그런데 지역교육청하

고 본청하고 구성된 사람들이 연합회를 구성을 할 수.....

● 총무과장 고일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이상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 총무과장 고일영

예 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이상일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모여서 하면은 징계의 무슨 사유가 됩니까?

● 총무과장 고일영

그것은 위법이죠.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하면 위법이죠.

● 간사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몰라가지고 그러는데요 제5조 보면은 명칭, 목적 및 사업, 18페이지, 후생대책 같은 것을 가려내고 하는 것은 이런 것 같은 협의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식당도 우리가 운영하겠다 구매하는 것도 하겠다 이런 것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대학의 경우 보면 밑에 과장급이상 간부급 보면 말로 구입을 자기네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냥 막연하게 목적 및 사업했는데 이런 것이 그렇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다

큰데 조례 한 것은 보셨죠, 사업?

● 총무과장 고일영

그런데 이것은 구내매점이라든지 이런 것
까지도 자체사업으로 하게 해 달라고 아마
나중에 협의를 하자고 할 가능성도 있겠습
니다.

● 위원장 이충원

그래서 여기 막연히 사업 해 봤을 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어때요.

● 이기수 위원

명시를 요한다던지

● 위원장 이충원

그런 얘기가 나올겁니다.

다른 것 더 하실 것 없으시면 질의 및 답
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시 없는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
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
례안

(11시 30분)

● 위원장 이충원

다음에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
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
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아까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
고 하겠습니다. 교원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교원지원과장 유승덕입니다.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
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라든지, 주요골자, 제정근거에
대한 것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에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
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 2조 수강료에 대한 것은 생략
하겠습니다.

3조에 보면 징수시기 및 방법, 수강료는
당해 개강일 5일전까지 충청북도 교육비특
별회계 금고에 납입한다.

4조 수강료의 미반환, 이미 납입한 수강
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한다.

1. 과오납입 경우, 2. 개강하기전 부득이
한 사유로 보수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경
우

5조 징수방법,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
로 선정된 자가 소정 기일내에 수강료를 납
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수강허가를 취소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의 수강
료는 교육과정명이 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과
정으로 되어 있고요. 교육시간이 336시간으
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230명

을 모집할 예정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40명 미만일 때에는 82만 6천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관계법령 발췌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충원

교원지원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뭐가 없으십니까?

손만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만재 위원

손만재입니다.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교육과정수강료징수에 있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국민들은 직장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고에서 우리 충청북도만 하더라도 여러군데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기술습득 뿐만아니라 숙식비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교육공무원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비만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번에는 교대출신 또는 중등학교교사 신규임용 때도 이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 안한다면 이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합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수강료를 교육청의 예비비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 또 없다면 그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충원

답변은 일괄 또는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예. 첫번째로 질문하신 본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 교과전담교사는 정규직이 아니고 임시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부담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임용전 교육수강료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여비라든지 경비를 다 부담해서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것은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기획관리과장 이기수입니다.

이 경비를 예비비에서 직접 지출을 할 수 있느냐 하시는 말씀은 현행상의 예비비에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예비비 지출사항은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에서는 지출해도 나중에 승인받기가 곤란한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경비를 걷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에 넣어서 직접경비를 지원하던지 하는 것이 옳습니다.

● 손만재 위원

그렇다고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에게는 국가에서 교육비 뿐만아니라

속식비까지 제공해 주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유독 교육공무원만 이렇게 징수를 한다 이런 말씀이예요. 이것에 대한 부당성을 교육부 당국에 건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육국장 최성태

교육국장 최성태입니다.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응시하고 수강대상자는 사실은 아직 공무원이 아닌 아직 교육가족이 아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연수가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이것을 꼭 제정해야 되겠다하는 것도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른 대책없이 바로 이 조례로 들어오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초등교원이 엄청나게 부족하게 되니까 이제 중등교원으로 대체하기 위한 교과전담제교사가 실시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전부 시·도가 전부 없으니까 3월 20일 공문을 내보내서 전부 일제히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16개 시·도중에 초등교사가 안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시험을 치르지 않는 시·도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 11개 시·도는 충청북도를 포함해서 11개 시·도는 전부 지금 교육부가 준 시안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학원이나 기타 실업구제책으로 여러가지 시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그러한 정부차원에서 그러한 준비가 제 개인생각으로는 덜된 상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손만재 위원

제가 말씀올리는 것은 지금 기술교육이나 다른 직장이 없는 사람들, 뭐 고등학교를 갓 나왔다던가, 또는 대학을 나왔다던가, 직장을 잃었다던가 하는 사람들에게는 국가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어찌 교육계만은 이것도 1년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사람에게 아주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만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서 이걸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하면은 이것을 교육부 당국에 본 교육청에서 건의사항이라도 낸 적이 있는지의 여부 이런 것을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230명 정도를 이번에 모집한다고 그러셨는데 230명을 모집하시면 지금 초등·중등 명예퇴직 신청한 사람들 전원수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요전에 교육감님 말씀은 초등에서 200명 내지 230명정도 명·퇴를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저께 또 마스크에서는 전원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 교육국장 최성태

230명은 현재 초등교과전담교사가 230명,

그래서 그 230명을 중등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대체해서 초등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고, 명·퇴관계는 지금 숫자가 총원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초등교원이 이번에 정년 62세 이상이 300여명 304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퇴희망자가 370여명 그래서 전체가 670명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670명에 대한 충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비축되어 있는 170여명, 그리고 지난번 추가모집한 14명,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230명, 교과전담교사를 학급담임을 돌리는 230명, 그 외에 통·폐합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100여명, 그래도 100여명 모자라는 인원은 지금 교단을 일단 떠나겠다고 하는 분들이 남겨봤자 크게 보탬이 안될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우선 다음 충원이 될 때까지 기간제 교사라도 써서 그분들을 전원 해주고 노력을 그런 방침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딱 그것이 저도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린 그렇게 희망하는 모든 초등선생님들에게 가능하면 전부 명·퇴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것이 우리 방침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틀림없이 다 시키겠느냐고 하길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못하겠는 것이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사라도 써서 해주는데, 기간제 교사라는 것이 신청이 들어와야 얼마나 들어올지, 그 충분히 하고도

남을 인원이 신청이 들어올지, 80명이 모자라는데 기간제 교원이 기간제 신청한 인원이 50명 밖에 안되었다 그럼 부득이 30명은 안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확실하게 다 꼭 해주겠느냐고 그것은 결과는 두고 봐야 되지만은 다 해줄 방침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 손만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요, 저희들이 담당 주무과나 또는 다른 선을 통해서 몇 명정도 이번에 명·퇴가 됩니까하는 것을 문의를 하면은 200명정도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는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일반 마스크에는 전원 수용을 하겠다하는 얘기가 나올 때 저희들하고 말의 차이가 나는데 일선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물을 때는 저는 아주 일관되게 200명정도 초등에서 된답디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저를 거짓말을 시킨 것 밖에 안되거든요.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저기 그 말씀은요, 저희들이 수용가능한 인원을 200명정도로 봤던 것이고요. 그 200명이 넘었을 때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교원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충당하는 쪽으로 해서 전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손만재 위원

제가 지금 말씀올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 마스크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주셨다고 하면 저한테도 문의한 사람한테도

전화라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랬으면 저희들이 일선학교에서 문의하는데 거짓말은 안할 것 아니냐. 교육위원은 모르는데 일반기자들은 알고서 방송을 하느냐. 이렇게 볼 때 아주 곤란했었어요. 앞으로 좀 이런 문제는 서로 협조하는 뜻에서 서로 그때 그때 알려 주시면 서로 거짓은 안하도록 이렇게 당부 말씀 드립니다. 모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그 이외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송진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러니까 선발한 사람에 대한 수강이지요?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예.

● 송진하 위원

선발을 했으면 우리가 앞으로 채용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우리 사람이지요. 여기 관계법령을 보면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육감에게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인데, 그 수강료는 강사로·관서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 이렇게 수강료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교육감에게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니까 조례를 수강생은 강사료만 내라 이렇게 조례를 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되는 겁니까?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말씀 이

해하시겠어요?

그래 이 수강료가 강사로·관서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현재 이 안은 전부다 수강생이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여기 몇가지는 또 안낼 수도 있는 문제나 이걸 물어 보는 거예요.

● 교육국장 최성태

이 수강료라는 것은 수강료를 우리가 그대로 거두겠다는 것은 그 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이고 어떻게 되든 조례에서 만들어지는데 지금 제공해 드린 것은 그 기초산출 자료를 제공해 드린 것입니다.

그 강사료가 한 60%정도 24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2천쯤 되고 관서당 운영비 그러니까 60%정도 될 것이고 10%정도가 기타 여비 뭐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계획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관서당운영비 30%를 제외해 볼 때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예비비를 동원하던, 될 동원하던 보충을 했을 적에는 이 연수가 진행이 될 수가 있죠. 이게 만약 깎여 버리면은 관서당운영비 속에는 보면은 대부분이 원고료라든가, 기타 수당들이 출제수당, 감독수당, 체점수당 이 수당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없이는 평가도 할 수 없고, 이것이 없으면 연수를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 거기 부분을 빼버리면은 다른 것으로 보충을 해 주는

● 송진하 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시·도는 재정이 좀 넉넉해서 이중에서 강사료만 받았다던가 하는데 우리도는 다 받았다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여기 교육부에서 보낸 공문의 내용을 우리가 검토를 해 봤을 때에 이것은 납부금액에 연수경비는 연수를 담당하는 교육기관에 내는 그 금액을 얘기한 것이지 개인이 내는 금액을 얘기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뀌어서 생각하면 이 연수경비를 줄 수도 있는게 아니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하고 발런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이걸로 봐서는 볼 수가 있어요.

● 위원장 이충원

제가 이런 것 같으네요. 교육청에서 대답을 하시겠지만은 자격취득이거든요, 자격취득은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전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격취득은 여기 보니까 자격취득을 위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랬고, 이게 교육주관청이 교육대학이 아마 주관청이 될 것 같아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그러합니다.

● 위원장 이충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어떻게든 다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동감인데 가난해서 지금 직업을 못갖는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예산집행은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와서 세출로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 교육연수를 교육대학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대학에서 240명을 336시간을 교육을 시키려면 240명이면 40명씩 4×6=24, 6학급을 하던지 이렇게 시키려면 이 82만 6천원이라는게 경비산출이 나온 것입니다. 그 산출나온 것을 학생들한테 부담시키는 것인데, 저희들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받아가지고,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금고라고 말씀 드렸지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들어와서 그대로 교육대학에 보내고 그냥 전도해 주면 교육대학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수당도 지불하고 거기에 운영비도 쓰고 이렇게 전부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예산에 들어온다면 조금 수입이 적어도 세출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까만은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자격취득을 위한 하나의 주민으로 봐서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부담시키는 것 때문에 그 경비의 100%를 그렇게 산정해서 부담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 사서교사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격강습은 전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예, 그것은 지원해 드렸습니다. 사서강습은 이미 교원으로 인정을 했고, 그건 특별 권력관계에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 교육국장 최성태

그리고 시·도별도 똑같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러니까 상급자격이라 해서 전부 지원을 안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줄 수도 있는 것인데, 사서교사 같으면 해줘야지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여기 뒤에 있는 표에 있는 별표는 각시·도가 11개 시·도가 똑같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손만재 위원

어느 도에서 이것이 조례가 결정이 된 도가 있습니까, 부산 되었습니까?

● 위원장 이충원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거나 정말 동정적이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해줘야 되지 않느냐. 원칙적인 것보다 시행청이나 저희가

● 송진하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수 위원

제가 잠깐.....

● 위원장 이충원

예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한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수강료 납부인데요 이게 결국은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좀 정부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들 부담을 좀 적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납부방법도 상당히 경직돼 있다는 얘기죠. 그 대학교 등록금도 이게 상당히 분납하라 이제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와서 못냈다면 들어와서 마치기 전까지 분납할 수 있는 방법도 터 줘야 되겠고 또 한가지 그 이 개강을 하고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혹시 건강으로서 받을 수 없다든지 이런 형편이 났을 경우에 그러면 수강료를 그럴 경우에 반환을 안해 주느냐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지금 또 그 두가지 말씀과 또 한가지는 수익자 부담원칙 물론 좋습니다.

이 방법은 IMF구제금융 상태에서 국가재정이 어려워져서 그렇지 이 분들을 임용하고나 가지고서 한다면 공무원이요. 들어올 때 임용을 벌써 해 놓고서 교육을 시키고서 나중에 학교 배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부에서 돈이 없고 하기 때문에 못해주는 것이지 기술적인 방법은, 아 임용하고 나 갖고서 입교일 이전에 임용하고서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되겠고 또 이제 자격취득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자격취득을 어떻게 됐느냐 하면 2대1 기간제로 해서 교육대학 계열대학에서 학점을 따야지 초등교사자격증이 나오지 이분들 자격 받는 것 없습니다. 중등교사자격증이라고 그냥 하는 얘기에요. 그럼 여기서 이

거 받았다고 자격증 안주지 않습니까?

● **고원지원과장 유승덕**

저기 자격증은 초등교과전담교사로 이렇게 자격증이 나갑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런데 교과전담교사

● **고원지원과장 유승덕**

교과전담교사하고 영어전담교사

● **이기수 위원**

아니 교과전담교사 자격증이 나온다면 왜 굳이 교육대학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계절제 대학 해가지고

● **고원지원과장 유승덕**

그것은 초등교사로서 정식 초등교사로서 학급담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이기수 위원**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한가지는 이 학생들이 대학에서 사실 중등교사 사범대학에서 영어교사, 미술교사, 체육교사, 음악교사 이걸 다 탄 애들이예요. 땀으면 이 학생들이 결국은 교육학도 말입니다. 아동발달이니 모든 정신위생이니 이런 모든 과목들을 다 이수한 학생들입니다. 16학점, 4학점 해가지고 21학점이상 이수한 학생들인데, 결국은 전공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교대출신들 보다 상당히 더 많이 학점을 따고 심도있게 더 공부한 학생들인데 교육학에서 일부 차이있는 것 때문에 편입을 해서 2년간 더 다닌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인색한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언론보도를 봤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교육대학에서 다시 편입해서 3학년, 4학년 해가지고 하면 방학때마다 돌아다니면서 등록금내고 말입니다. 한 2년간 이렇게 하게 하지말고 정부에서도 안판 학점만 몇가지더 수료해가지고 초등교사자격증으로 교체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자격증자체도 해야지. 이게 보면 처음서부터 납부하는 것, 결국은 수강료 납부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기간이라든지 같은 대학을 나와가지고서 이걸 상당히 뭔가 뻑뻑하고 어렵게끔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부에 건의를 해가지고서 좀더 융통성있게 이걸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또한가지 230명이라는 얘기는 어떤 근거에서 230명을 한겁니까? 지금 국장님 보니까 말씀에서 170명하고 14명하면 184명이다. 이 사람들 230명에서 314명에서 100명 플러스하면 414명인데 670명하고 차이는 256명의 차이가 충청북도에 앞으로 충원계획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230명이라는 그 예정인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늘릴 수는 없습니까?

● **고원지원과장 유승덕**

지금 교과전담교사로 배정되어 있는 숫자가 230명이예요.

● **이기수 위원**

그건 교육부에서 배정한 겁니까?

● **고원지원과장 유승덕**

아니죠. 우리 충청원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지요. 그래서 지금 교과전담교사를 말하고 있는 분들이 9월 1일 이후로 학급담임으로 전용을 해야되고, 그 자리를 교과전담 중등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서 충당시키는 쪽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숫자입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런데 지금 230명이 전체 초등교사가 국장님 말씀이 670명이 부족하다고 하셨죠. 퇴직자 300명에다가 명·퇴자 370명하면 670명이 초등교사가 퇴직을 하게끔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670명에 대한 소요부족 기간 인원을 다시 보충해야할 인원이 670명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을 숫자를 계산해보니까 414명이 나오더라고요.

● 교육국장 최성태

513명이 나옵니다.

● 이기수 위원

제가 100명 차이가 나게끔, 그러면 지금 670명인데 513명의 차이면 한 150명 이상 차이가 나는 얘기인데 아까 손위원님 말씀대로 어제 보도에는 전체를 수용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230명을 좀 더한 다던지 하면 이 숫자를 줄여 나갈 수 있는 얘기니까 230명에 대한 숫자는 좀 융통성있게 할 수 없는 얘기냐. 지금 중등교사로서 지금 적재된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지금 모집하다보면 상당한 인원이 여기 응시할 것으로 봅니다.

● 교육국장 최성태

230명이 우리 교과전담교사로서 현재 티오가 초등티오가 전체가 230명, 그러니까 230명 전체를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로 대체를 했는데

● 이기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그 티오를 어디서 받은 겁니까?

● 교육국장 최성태

원래 총정원제에서

● 이기수 위원

총정원제에서 받은 거예요?

● 교육국장 최성태

예, 받은 거예요. 그건 우리 마음대로 늘이고 줄이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그건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230명이라는 것은 교과전담 과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늘린다고 하는 경우는 결국 총정원에서 총정원이 1천명인데 학급이 700학급이다 그러면 나머지 교과전담이 300학급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30을 더 늘릴 수는 현재 상황으로는 없는 것이고, 또 교과전담교사 이외에 중등교사가 일반 초등학급까지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인원은 지금 고정적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반대로 학급을 줄이고 현재보다 학급을 줄이고 전담교사를 더 늘린다는 방법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고 초등 학교 담임문제가 해결되는건 아닙니다. 결국 중등교사는 초등학급 직접담임은 못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충원

이기수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 이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충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상일

이게 저희들한테는 심의권이 없는 거지요? 이미 관서운영비 얼마해 주고, 심지어는 업무추진비에 총장하고 원장 180만원까지 주라게 나와있는데 이건 그냥 엄격하게 따지면 주민 부담사항은 우리가 심의를 해서 가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심의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러다 도의회에서 총장은 가르키지도 않는데 특강을 가면 특강 강사료로 주고 그건 깎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액수 깎을 수도 없으면 이거 뭐하러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합니까, 이게 표준입니까, 우리가 여기 손을 댈 수가 있는 겁니까?

● 고원지원과장 유승덕

교육부 표준입니다.

● 간사 이상일

표준이면 우리가 지금 230명이면 어떤 표준에 들어가는 겁니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240명 미만입니다.

● 간사 이상일

그런데 어느 표나 마찬가지로요. 어느 표

나 총장하고 원장 180만원 주는 것은 똑같아요.

● 고원지원과장 유승덕

예, 이것은 교육부에서 표준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려 보내준 것이지, 이것대로 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국을 똑같은 연수고, 또 교육대학에서 실시하고 이런 것을 차등들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표준해 놓지 않으면 시·도별로 전부 들쭉날쭉일 것입니다. 그래서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 표준을 따라주는 것이 서로 시·도간 형평이 맞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정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똑같이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되면 시·도별로 전부 흩어집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만든 것입니다.

● 간사 이상일

이게 우리가 그걸 존중해 가지고서 그냥 올렸다 이랬을 때 도의회에서 무슨 소리냐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손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쪽 총장님들 들으면 섭섭할 소리지만 총장 그것 아니라도 봉급 받고 판공비 받는데 애들 석달 와가지고서 직접 가르키지도 않는 것 뭘 깎으라고 그래서 깎아 내렸을 때 이 우리 체면이 뭐가 되겠냐는 그런 얘기지. 사실 총장님들은 섭섭할테지만 사실 6월부터 하는 겁니까?

● 고원지원과장 유승덕

예.

● 간사 이상일

사실 6, 7, 8이면 8월만 방학이고, 6, 7월이면 대학에 애들 다 공부하는 철인데, 결들여서 개들 좋게 해주는 것인데, 교육부가 이런 표준화를 만들어 놓고서 의례적으로 그냥 넘어가라 이러는게 우습단 말이에요. 여기 원장은 기숙사 원장입니까?

● 고원지원과장 유승덕

연수원장입니다.

● 간사 이상일

연수원.

● 송진하 위원

글쎄,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상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00만원 (청불)

● 고원지원과장 유승덕

여기에 총장·원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시킨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대학 우리기관이 아닌 교육대학에다 의퇴를 해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정말로 도의회에서 도의원들께서 이거 깎자 이렇게 하면 저희 집행청에서도 나중에 싹 깎여가지고 과연 교육대학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게 되는 것이지

요.

● 간사 이상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지금 집행청에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반영하셔서 혹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에서 전국적인 단위에서 논의가 있었을 때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상일위원님 말씀하신던 것에 예외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의회가서 깎았을 때 그러면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서 깎이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교육이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보면 그래요, 기관장이 판공비를 먹을 때에 많은 분야는 받아도 작은 분야는 그렇잖아요. 안 받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그전에 연구소장 했을 때 가급적이면 저기 해서 꼭 판공비를 여러군데서 받도록 그렇게 했는데 교육대학 자체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들어가 가지고 이중적으로 이것을 받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자체적으로 반납을 하는 그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이지요. 그전에 교육부에서는 다른 시·도에 책정했는데 이곳은 책정안하기는 참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이제껏 제가 장시간 논의한 것인데 역시 교육청에서는 참고로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협의회가 있었을 때에 말씀을 해주시고, 좋은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말씀

하시는 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시고 좋게 받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끝나는 걸로 해서요.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산회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를 해 주셨고, 여러 가지로

의문점에 대해서 많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청에서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7분 산회)

0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이충원, 간사 이상일,

위원 손만재, 송진하, 이기수.

0 출석공무원 : 5명

교육국장 최성태,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총무과장 고일영,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 부 록

▶ 의사일정(안) : (별첨1)

▶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조례 제정내용 : (별첨2)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淸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9년 4월 26일 (월요일) 10시 05분

議事日程 (제101회 임시회 제2차 조례소위원회)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이충원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차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조례안 2건에 대한 표결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05분)

● 위원장 이충원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무슨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

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의결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초안작성에 참여한 의안담당의 설명을 의안계장님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안담당 연승흠

의안담당 연승흠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초안을 보시면 맨 앞에 심사경과라든가 제안설명 주요내용 이런 것들은 제안설명이라든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요일에 1차 소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뒷부분에 보시면 다섯번째 심사보고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가입대상 공무원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법률로 정한 사항이라 불가피하다는데에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공무원직장협의회 의견수렴이 활성화되고 실질적으로 업무나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등 직장협의회가 발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램,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원안을 작성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보충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사보고서를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 위원장 이충원

지금 설명 들으셨는데, 이 설명을 들으신 후에 혹시 제가 빼놓은 것이 있거나 보완할 것, 또 이렇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잘 된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충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충원

그럼 보완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보고서는 그대로 본회의에 내일이죠?

● 이기수 위원

네.

● 위원장 이충원

내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10시 08분)

● 위원장 이충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도 이미 1차 소위원회에서 질의 및 답변이 끝났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무슨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심사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역시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담당 연승흠

끝부분에 심사보고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립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시험에 선발된 자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실업자교육 및 공무원 즉 교원 교육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전담교사의 자격취득에 따른 수강료를 본인들에게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자격취득에 따른 제반 경비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작성되었다는데 심사위원회 의견을 모았으며, 향후 본 조례 시행시 선발된 교과전담교사 중 수강료와 관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원안을 작성해 봤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다 들으셨는데 보완할 사항같은 것 없으시죠?

● 김광수 위원

보완할 사항은 없고 잘 되었는데요. 이것이 도의회가서 최종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네.

● 김광수 위원

거기서 별 이의 없도록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충원

그래서 항상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통과된 것이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좋는데 더러 보면은 우리가 상상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하나 드립니다.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전에 보면은 기관에 책임자는 다른 부수적인 것, 그것은 많은 것만 받지 작은 것은 안받도록 되어 있던게 있습니다. 제가 교육대학의 원장이었을 때에 보면 이충으로 심지어는 공무원들 여기 계시지만 공무원교육기관, 교육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공무원교육기관 단재교육원에서 감사를 받으십니까, 여기서 나가시면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저희가 나갔을 적예요?

● 위원장 이충원

예.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실제 직접적인 관계라하는 담당공무원은 안봤지만 타과 자기 직접 아닌 경우에는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아 감사를 받고 있다. 그전에는 그게 공

무원은 안받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여쭙는고 하니 간담회에서 했는데, 가난한 아이들인데 지금 대개 어려운 아이들이 가급적이면 조금 내고서 교육을 받아보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타시·도를 감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전 김의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회의록에 남기지 않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예, 그렇게 하시죠.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회의록 삭제

● 김광수 위원

이게 사실상 교육부지침이 있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불가피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이 조례 필요없이 교육부에서 지시사항으로 역시 말하자면 수강을 하는 사람이 자부담해서 해라, 이런 공문만 하나만 보내면 이렇게 복잡하게 안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저희도 그렇게 봅니다.

● 김광수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서 도의회 가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이의 제기하고 자꾸 꼬투리 잡아 놓을 것 같으면 모양새가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 위원장 이충원

좋지 않게 얘기한다면 교육부에서 여기에 다 각 지방청에다 책임을 떠넘기는 것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 이기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드리지만 도의회 가서 삭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교대총장에 대한 원장의 업무추진비 관계, 그 얘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거기 그 부분 하나하고 또한가지는 등록금도 분납받지 않습니까. 이거 분납하지 어떻게 일시불로 받고 어려운 애들 취직도 못하고 있는 애들에게 이러느냐 이 부분이 논의될 것 같아요.

● 간사 이상일

그것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충원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다 똑같은 집행청이나 저희의 똑같은 생각인데, 회의록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남겨 놓으시고 본회의에 가서 설명하실 때 분명히 저희들이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도 좀, 나중에 거기서 묻거든 얘기해 주시죠.

● 김광수 위원

하여튼 교육부에서 잘 못하는 거예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수강료 내는 것이다. 그렇게만 지시하면 그만이거든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여기 교육부령에 이미 지침에 보면 여기서 이것을 개정을 했으면 되는 것인데, 제4

조의 직할시 및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여기 있긴 있습니다. 교육부에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럼 그렇게하면 됐지.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부령으로 자기들이 정하지 않고 여기서 그걸 시·도에 또 위임을 했어요. 이것을 개정을 해가지고 아주 이 부령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던지, 또

● 이기수 위원

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고일영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과연 우리가 필요해서 채용을 해서 일단 합격을 시킨 사람이면 여비도 아니고 운영비고 수당인데, 저희 예산에서 배정이 안될까하는 생각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아니 그리고 또한가지는 공무원이 아니고 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처음에 교육받기 전에 발령내고 그 다음에 교육기간까지 경력에 넣어주면 경력에 환산되지 돈 안내지 여러가지로 하는 절차가 있는데 되지 않을까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정식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 위원장 이충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말씀 드린대로 심사 보고서에 지금 여러가지 논의된 것을 조금 삽입해 주시고, 그 안은 본회의에 원안대로 보고를 하고 그 주변 논의된 것은 설명을 해서 이렇게해서 내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안담당 연승흠

그 내용이 뒷부분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어디 있습니까?

● 의안담당 연승흠

예, 현재 실업자교육 및 공무원 교원 교육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자격취득에 따른 수강료를 본인들에게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그런 것들이 거기 심사보고서에 건의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충원

그것좀 유념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도의원이 라 하더라도 연수경비에서 강사료나 관서운영비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여비 6회나 어디 출장갈 때가 어디 있으며, 업무추진비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시·도교육대학하고, 교육부하고, 시·도관계자 장학관님하고 과장님회의도 있고요. 교육과정 같은 것을 전부 맞

취야 되니까요. 그래서 회의는 출장도 있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서울회의는 나중이지요.

● 송진하 위원
업무추진비는 총장까지 다 받고

● 위원장 이충원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해본 장난인데, 액수를 정해놓고 그걸 여기저기 붙이다가 보니까 뭐 출장도 갈 수 있는거고 하여튼 우리 자체에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기관에 위탁하는데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님들!

이들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른 때보다 이번에는 진지하게 여러가지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주셔서 크게 발전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함과 아울러 본 조례심사소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충원, 간사 이상일,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기수.

○ 출석공무원 : 5명







교원지원과장 유승덕, 총무과장 고일영, 기획관리과장 이기수.

※ 부 록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회의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안) : (별첨3)
- ▶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안) : (별첨4)

제10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1999. 4. .

위원장	이충원	
간사	이상일	
위원	김광수	
위원	손만재	
위원	송진하	
위원	이기수	

(별첨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0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999. 4. 24 (토) 11:00~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최]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5.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1999. 4. 26 (월) 10:00~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최]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폐회	

(별첨2)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조례 제정내용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주요내용

제1조(목적)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 기관장이 4급이상(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
 - 기관장이 5급이하인 경우 기관장이 4급이상인 상급기관에 통합설립가능
 - 초·중·고·특수학교는 기관장이 4급이상인 상급기관에 통합설립 가능
 -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가능
 - 2개기관 단위에 걸쳐 1개의 협의회 설립불가
 - 협의회간 연합협의회 설립불가
- ※ 설립가능기관 :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의사국

제3조(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 지휘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 정리, 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기밀업무(감사, 조사, 기밀, 유선교환)에 종사하는 공무원
- 보안,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기관장은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및 업무를 지정공고

제4조(협의회 설립)

-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 개최 일시, 장소, 설립준비 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이상 게시
- 협의회 설립후 설립사실을 설립기관장에게 통보
 -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 명부, 설립총회 회의록 첨부
- 설립기관장은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해야함
 - 설립증을 교부 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봄

제5조(협의회 규정)

- 협의회는 다음사항이 기재된 규정을 제정해야함.
- 명칭, 목적 및 사업, 협의위원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 회원 및 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변경에 관한사항, 규율 및 회계, 재산에 관한사항

제6조(협의회 가입 및 탈퇴)

- 협의회 가입 및 탈퇴원서는 대표자에게 제출함
- 인사발령,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가입이 금지 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인사발령 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를 탈퇴한 것으로 봄.
 - 인사발령부서, 사무분장 변경부서는 변경사항을 협의회에 통보

제7조(회원의 제명)

-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 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로 처리 - 의결전에 소명 기회 부여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함
- 직종별, 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 선임
-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
- 협의위원 및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음(연임가능)

제9조(이의신청) 협의회 가입 대상공무원은 협의회설립 사실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기관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제10조(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

-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함 - 필요시 수시 협의 가능
- 협의회 대표자는 기관장과 협의하고자 할 경우 7일전까지 문서로 기관장에게 요구
- 기관장은 협의회와 직접협의를 해야 함 - 부득이한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 권한위임 가능
- 협의회와 기관장은 회의록을 3년간 보존함

제11조(협의사항 이행) 협의회와 기관장은 협의사항을 소속공무원에게 알리고 이행에 노력해야함

제12조(협의회의 의무)

- 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함
- 협의회 대표자, 협의위원 및 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관장에게 통보

제13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 제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
하되 기관장과의 협의는 근무시간중에 할 수 있음

제14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들
수 없음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기관장은 협의회 활동을 위하여 당해기관의 회의장소, 사무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음

제16조(세부사항 위임)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함

조 례

◎ 충청북도조례 제2440호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충청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9년 2월 19일

충청북도지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기관장이 5급이하인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와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두 개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③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실·국·과 및 담당관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한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임용·진직·전보·겸임·과건·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년직·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실·국·과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기관(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 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두 개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⑥협의회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임기·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제6조(협회의 가입 및 탈퇴) ①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 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이내로 한다.

②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한다
2.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⑤협회의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⑤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11조(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의 의무) ① 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및 협의회 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이내에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 규정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세부사항 위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대상공무원 현황(6급이하)

기관구분	정 원			가 입 금 지 자			가 입 대 상 자		
	일반직	기능직	계	일반직	기능직	계	일반직 (%)	기능직 (%)	계 (%)
도교육청 및 고등·특수학교	208	354	562	128	20	148	80	334	414
직속기관	33	89	122	11	11	22	22	78	100
지역교육청 및 산하기관	719	1,337	2,056	448	131	579	271	1,206	1,477
교 위	4	6	10		2	2	4	4	8
합 계	964	1,786	2,750	587	164	751	377 (39%)	1,622 (90.8%)	1,999 (72.6%)

(별첨 3)

(제101회 임시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안)

1999. 4. 26

충청북도교육위원회조례심사소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4월 16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1999년 4월 24일

다. 상정일자 : 1998년 4월 24일(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4월 24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4월 26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가. 제안이유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1998. 2. 24. 법률 제551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직장협의회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장이 5급 이하인 기관과, 초·중·고·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통합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함. (안 제2조)

○ 법률에서 정한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관장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함.

(안 제3조)

○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안내문을 7일이상 게시토록 하고, 설립사실 통보서를 받은 기관장은 7일 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교부 받은 날에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것으로 봄. (안 제4조)

-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정하도록 함.
(안 제5조)
- 협의회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사명령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으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일자로 협의회를 탈퇴한 것으로 봄. (안 제6조)
-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도록 함. (안 제8조)
-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 협의회는 운영은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도록 함. (안 제13조 내지 제15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제정조례안은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가입대상 공무원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법률로 정한 사항이라 불가피하다는데에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공무원직장협의회 의견수렴이 활성화되고 실질적으로 업무나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등 직장협의회가 발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첨 4)

(제101회 임시회)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안)

1999. 4. 26

충청북도교육위원회조례심사소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4월 20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회부일자 : 1999년 4월 24일
- 다. 상정일자 : 1998년 4월 24일(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4월 24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9년 4월 26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교육국장 최성태)

가. 제안이유

-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제8조에 의거 '99 공립 초등학교 교과 전담교사 시험에 선발된 자의 교과전담 교사의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를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보수교육대상자 수강료 (안 제2조)
「80명미만 1,071,000원, 120명미만 954,000원, 160명미만 887,000원,
200명미만 854,000원, 240명미만 826,000원, 280명미만 811,000원,
320명미만 796,000원, 320명이상 787,000원」
- 수강료는 당해 개강일 5일전까지 납부 (안 제3조)
- 과오납 및 개강하기전 부득이 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료 미반환 (안 제4조 제1호 및 제2호)
- 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 한 때에는 수강허가 취소 (안 제5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본 제정조례안은 공립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시험에 선발된 자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실업자교육 및 공무원(교원) 교육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전담교사의 자격취득에 따른 수강료를 본인들에게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자격취득에 따른 제반 경비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작성되었다는데 심사위원의 의견을 모았으며,

향후 본 조례 시행시 선발된 교과전담교사 중 수강료와 관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